

## 감리지적 사례 FSS/1912-23 :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계상

- 쟁점분야 : 허위 매출계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5.1.1.~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신규로 식품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X3년 말에 판매 및 상품 제조를 위해 타법인(종속회사B, 지분율 80%)에 투자하고 X4년 3월부터 관련 매출을 계상하기 시작하였다. S사는 종속회사B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대리점 등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매출확대를 추진하였으나, X4년 11월까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매출대금은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S사는 X4.12.20. 종속회사 B에게 자금지원(지분투자 100억원)을 하였고, B사는 다시 S사의 거래처 C, D에 각각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S사는 X4.12.20. 종속회사 B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종속회사투자주식으로 계상한 후 X4년 말 전액 손상 처리하였다. S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직전 3개연도(X1~X3년)에서 10억~30억원대의 영업 손실을 시현하였고 X4년에는 1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다.

S사의 매출인식 및 자금대여 흐름도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X4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출고되지 않은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여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함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판매자가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4.6.에서는 회계처리시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관련 기준서 내용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 문단14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문단18 -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문단 4.6. -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S사가 X3년말 회사의 경영권이 변경되면서 식품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개시한 후, 별도재무제표상의 X4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400% 이상)한 것과 관련하여 동 매출 증가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검토 과정에서 종속회사B가 X4년말 거액의 대여거래를 실행한 사실과 동 대여금이 제3업체를 통해 S사의 매출업체인 판매대리점에 재대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S사의 계정원장을 검토하여 유사한 시기에 동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회사 매출채권이 일시 회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류흐름을 확인한 결과 물류창고 입출고자료에는 S사가 X4년 9월에 매출계상한 상품이 S사 물류창고에 실제로는 X5년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S사의 포장지제조업체 등에 확인한 결과 X4년 매출 계상한 상품중 X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조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X4년말에 S사가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종속회사 B로 하여금 거래처 C사 및 D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을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에 따르면 후속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하고,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 520(분석적절차) 등에 따르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른 관련 정보와

불일치하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등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S사의 감사인은 감사위험 평가시 신규 사업과 관련한 매출에 유의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물류창고수불부 및 매출·매입거래 운송서류 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 상품의 매출·매입수량 일치 여부 검토 등 수익·비용 대응 적정성 검토 등의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 5. 시사점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관련하여 매출계상내역과 물류창고 입출고내역을 비교하는 등 물류흐름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면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례의 경우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한 경우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요건 또는 상장폐지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해야하는 부분을 자산화하여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바, 관리종목 지정요건 회피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일부 발췌)

구 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매출액	<b>【관리】</b> 최근년 5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b>【퇴출】</b>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b>【관리】</b> 최근년 30억원 미만 *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b>【퇴출】</b> 2년 연속 30억원 미만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	<b>【관리】</b>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연결 기준)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b>【퇴출】</b>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장기간 영업손실	-	<b>【관리】</b>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별도 기준, 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